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17. ~ 10.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6,212”를 “6,18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를 삭제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12”를 “6,103”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82 다음에 “별정직 계 27”를 신설하며, 별정직 계 27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8”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단 18 다음에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9”를 신설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또는 4급 이하 9명) 중 초과

현원 9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u>7퍼</u> <u>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 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 -----. ----- ----- <u>10퍼</u> <u>센트</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 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 령」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 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일반직 계	<u>6,212</u>	<u>6,185</u>	-27
<u>고위공무원단</u>	<u>18</u>	<u><삭 제></u>	-18
3급 또는 4급 이하	<u>6,112</u>	<u>6,103</u>	-9
·	·	·	
<u>별정직 계</u>	<u><신 설></u>	<u>27</u>	+27
<u>고위공무원단</u>	<u><신 설></u>	<u>18</u>	+18
<u>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u>	<u><신 설></u>	<u>9</u>	+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8